

구약논단

제15권 2호(통권 32집) 2009년 6월 30일

조 미형(감신대 강사)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성금령 비교연구	167
본 논문은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에서의 근친상간법을 간본문적 해석방법에 의해 비교분석하였다. 고대 서아시아 법전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레 18장과 상당한 유사성과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 고대 서아시아 법전은 레 18장에 표현되지 않은 다양한 사례 법과 “딸”의 목록까지 포함하고 있어 레 18장의 법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유익하다.	
Cho, Mi-Hyoung A Comparative Study on Sexual Prohibitions in Lev. 18 and the Ancient Near East Code	167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성 금령 비교 연구: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

조 미형 | 감신대 감사

1. 서론

구약 성서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성(性)에 관한 문제를 가장 조직적으로 다룬 본문은 레 18장이다. 레 18장은 성결법전(H: Holiness Code) 가운데에 자리하여 가족의 정결(淨潔)과 공동체의 성결(聖潔)에 대한 규범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¹⁾ 가족 내 כּל־שֵׂאֵר בְּשָׂרוֹ(콜-쉐에르 베사로/가까운 살붙이)와의 성 관계를 금하는 금령(레 18: 6-18)에서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개별 금령 목록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족 내의 불법적 성행위에 대한 성 금령은 고대 서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예. CH §157, 158; HL §189a, 193; MAL §46). 이러한 법들은 내용과 형식 및 기능 면에서 레 18장과 유사하지만 각기 독창적인 면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전)은 고대 서아시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및 언어의 배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전승과 전통의 탐색은 고대 서아시아 법들에 대한 비교와 대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고대 서아시아의 대표적인 법(전)으로는 수메르어로 기록된 우르-남무

* 본 논문은 필자의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년 후기)의 일부를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1) S. J. Melcher, “레위기의 성결법전과 인간의 성(性),” (강 성열 옮김) 『神學理解』 17(1999), 554-578쪽; 박 철우, “성결법(레위기 17-26장)의 구조 및 신학연구,” 『신학사상』 70(1990), 589-642쪽; 조 미형, “레위기 18장의 성행위 금령 연구,” 『구약논단』 제23집(2007), 120-146쪽.

법전(LU: The Laws of Urnammu, 2100 B.C.)과 리피트-이슈타르 법전(LL: The Laws of Lipit-Ishtar, 1930 B.C.), 아카드어로 기록된 에슈누나 법전(LE: The Laws of Eshnunna, 1800 B.C.), 함무라비 법전(CH: The Code of Hammurabi, 1750 B.C.), 중세 아시리아 법(MAL: The Middle Assyrian Laws, 14-12세기 B.C.), 그리고 히타이트 법(HL: The Hittite Laws, 16-12세기 B.C.)을 들 수 있다.²⁾ LU는 비교적 긴 전문에서 기득권자들의 권력 남용과 사회 비리를 바로 잡고, 약자를 보호하며 수메르 땅에 정의를 세웠다고 기록한다. 고대 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면서, 주로 가족문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약 40개의 법으로 구성되었으나, 22개 법 조항만이 보존되어 있다.³⁾ LL은 38개의 법조문에 전문과 후기가 첨가되어 있으며, 법률의 초점은 가사, 상속, 재산, 노예, 민법 등을 다루고 있다.⁴⁾ LE는 60개 조항들이 민법과 형법을 포함하여 결혼과 가족, 재산, 노예, 부채, 살인, 간음, 절도, 강간, 거짓 증언, 폭행 및 채무 등 전반적으로 상류 계층의 이익 도모, 사회 질서 유지에 유익한 여러 제도와 관행을 다룬다.⁵⁾ CH는 고대 바벨론 제국(c. 1894-1595 B.C.)의 제 6대왕으로 가장 잘 알려진 함무라비가 편집했다. 전형적인 법 양식인 전문, 법조문, 결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고대법들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길고, 잘 보존된 법으로, 후대의 법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⁶⁾ 이 비교

2) 참조 G. R. Driver/J. C. Miles(eds.), *The Assyrian Laws*,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35); *The Babylonian Laws*, (Oxford: Clarendon Press, 1952); J.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Michigan: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9); M. Malul, *The Comparative Method in Ancient Near Eastern and Biblical Legal Studie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0); M. T. Roth,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SBL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Series*, (Atlanta: Scholars Press, 1977); R. Westbrook (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2 Vols, (Leiden: Brill, 2003); 김 영진, 「율법과 고대근동의 법 연구: 율법과 법전」 (서울: 한울출판사, 2005); 박 기석, 「古代 히브리 法思想에 關한 研究」 (광주: 전남대학교, 1986); 이 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8).

3) S. N. Kramer, "The Ur-Nammu Code: Who Was Its Author?," *Or* 52(1983), 453-456쪽; 크레이머는 이 법전이 사실로는 우르-남무(Ur-Nammu)의 아들 그리고 계승자인 Šulgi의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J. J. Finkelstein, "The Law of Ur-Nammu," *ANET*, 523-525쪽.

4) S. N. Kramer, "Lipit-Ishtar Lawcode," *ANET*, 159-161쪽.

5) A. Goetze, "The Laws of Eshnunna," *AASOR* 31(1956); R. Yaron, *The Laws of Eshnunna*, 2nd ed., (Jerusalem: Magnes Press, 1988).

6) R. F. Harper (ed.), *The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4); T. Meek, "The Code of Hammurabi," J. B. Pritchard (ed.), *Ancient Near*

연구는 바빌론과 이스라엘 문화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기인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두 문화가 같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비슷한 절차를 발전시킨 몇 가지 가치들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MAL은 중세 아시리아 시대의 강성기에 디글랏빌레셀 1세(Tiglathpileser I, c.1114-1076 B.C.)에 의해 편찬된 법으로 독재 왕정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주로 성 관계에 치중한 조항들로 여성을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서 저급하게 취급한 일면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⁷⁾ 각 서판(MAL A-O)은 훼손된 조항을 포함하여 대략 140여 개에 이르는데, A 사본⁸⁾은 59개의 조항으로 분류된다. 코사커(P. Koschaker)는 그것이 주로 수메르 법에 기초한 편찬으로서 많은 내삽법(interpolations)을 담고 있으며, 원래 텍스트의 변경뿐만 아니라 설명적 주석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⁹⁾ 서판 A의 목적과 대상은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에게 작용하는 법의 편집이다. 결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다루는 이와 같은 법 모음집은 참으로 새롭다. 그러나 이런 법이 여성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세 아시리아에서 여성을 해방하는 운동이 있었다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지만, 선재하는 법(pre-existing law)을 전제하여, 여성과 관련된, 특히 결혼한 여성과 관련된 법을 수정하려는 입법자의 작업이었다고 짐작된다. 이런 가정에 대한 증거는 바빌로니아 법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논의되는 주석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⁰⁾ 특히 MAL §46은 다른 법전의 근친상간 처벌 규정과는 달리, 여성을 돌보는 부양(扶養)의 주제로 진전된 사례를 나타낸다. HL은 기원전 1450-1200 하티 왕국의 법 정신을 대표한다. 이 법의 특징은 살인에 대해 형벌 규정 대신 보상을 규정하며,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고의성과 우발성에 따른 보상을 분명히 한다.¹¹⁾ 성서의 계약 구조는 기원전 2000-1000년대 후반의 히타이트 계약 구조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7) 이 종근, *윗글*, 136-161쪽.

8) G. R. Driver/J. C. Miles (eds.), *The Assyrian Laws*, 12쪽; 서판 A는 전체의 수집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비평들이 대부분 제한하여 다루는 법으로서, 여성관련 사례는 남색과 파손된 조항을 제외한 55개 조항이다.

9) P. Koschaker, *Quellenkritische Untersuchungen zu den 'altassyrischen Gesetzen'*, 79-84쪽; G. R. Driver/J. C. Miles (eds.), *The Assyrian Laws*, 13-14쪽.

10) G. R. Driver/J. C. Miles (eds.), *윗글*, 13-14쪽. 예를 들면, MAL A §§27; 29; 30; 38; 45; 46; 50.

11) 참조. H. A. Hoffner Jr.(ed.), *The Laws of The Hittites*, (Leiden · New York · Köln: Brill, 1997).

레위기의 성결법전과 신명기법은 히타이트의 계약 문서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내용, 길이, 강조 점, 신학, 법과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¹²⁾

본 소고는 고대 서아시아의 법들과 레 18장의 근친상간법을 본문간 해석(Intertextuality)으로 비교 분석하고, '성'과 '가족'에 관한 고대 서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규범에서 레 18장의 성 규범을 조명함으로써 레 18장의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 금령(레 18: 6-18)에 대한 보다 충실한 분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 가족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

레 18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웃 윤리의 기초인 성도덕의 내용으로서¹³⁾ 가족 안에서의 성 금령(레 18: 6-18)과 공동체 내의 성 금령(레 18: 19-23)을 포함하고 있다.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지 목록은 친어머니(레 18: 7), 아버지의 여인(레 18: 8), 이복누이와 동복누이(레 18: 9), 손녀 또는 외손녀(레 18: 10), 의붓누이(레 18: 11), 고모(레 18: 12), 이모(레 18: 13), 백숙모(레 18: 14), 며느리(레 18: 15), 남자 형제의 아내(레 18: 16), 한 여인과 그 딸(레 18: 17), 한 여인과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레 18: 17), 아내와 그 자매(레 18: 18)이다. 레 18장의 금지 목록과 고대 서아시아의 법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성결법전(H) 레 18장	우르- 남부법 전(LU)	리피트- 이슈타 르법전 (LL)	에슈눈 나법 (LE)	함무라비 법전(CH)	히타이트 법 (HL)	중세 아시아 법(MAL)
· 친어머니(레 18: 7)				CH 157	HL 189a	
· 아버지의 여인(레 18: 8)				CH 158	HL 190	MAL 46
· 이복누이 · 동복누이(레 18: 9)						
· 손녀 또는 외손녀(레 18: 10)						
· 의붓누이(레 18: 11)						
· 고모(레 18: 12)						
· 이모(레 18: 13)						
· 백(숙)모(레 18: 14)						
· 며느리(레 18: 15)				CH 155		

12) J. H. Walton, 윗글, 100-101, 107쪽.

13) 김 중은, 「거룩한 길 다니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123쪽.

성경법전(H) 레 18장	우르- 남부법 전(LU)	리퍼트- 이슈타 르법전 (LL)	에슈논 나법 (LE)	함무라비 법전(CH)	히타이트 법 (HL)	중세 아시아 법(MAL)
· 남자형제의 아내(레 18: 16)					HL 193, 195a	MAL 33
· 한 여인과 그 딸(성관계)(레 18: 17a)					HL 191	
· 한 여인과 그 손녀나 외손녀(결혼) (레 18: 17b)						
· 아내와 그 자매(레 18: 18)					HL 192, 195c	
· 월경하는 여인(레 18: 19)						
· 이웃의 아내와의 간음(레 18: 20)	LU6-8		LE 28		HL 197, 198	MAL 13-18
· 몰래에게 희생 제물로 자손을 주는 것 (레 18: 21)						
· 남성 간의 성교(레 18: 22)					HL 189c	MAL 19-20
· 남성과 동물의 성교(레 18: 23a)					HL 187-188, 200	
· 여성과 동물의 성교(레 18: 23b)						
· 친딸(성서에는 없는 사례)				CH 154	HL 189b	

그 밖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간음과 강간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14)

· 기혼 여성의 간음 (레 18: 20; 20: 10; 신 22: 22)	LU 7		LE 28	CH 129, 133B		MAL 13-16
· 처녀의 간음 (신 22: 20-21)						MAL 56
· 결혼 또는 약혼한 여성에 대한 강간 (신 22: 25)	LU 6		LE 26	CH 130	HL 197a	MAL 12, 23b
· 처녀에 대한 강간 (레 19: 20; 신 22: 28-29)			LE 31			MAL 55
· 기혼 여성의 간음사건에 관한 기소 (신 22: 13-21)	LU 14			CH 127, 131, 132		MAL 17
· 처녀의 간음사건에 관한 기소		LL 33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에서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 금령의 공통 금기로는 친어머니(레 18: 7; CH §157; HL §189a), 아버지의 여인(레 18: 8; CH §158; MAL §46; HL §190), 며느리(레 18: 15; CH §155), 남자 형제의 아내(레 18: 16; MAL §33; HL §193, 195a), 한 여인과 그 딸(레 18: 17a; HL §191), 아내와 그 자매(레 18: 18; HL §192, 195c)에 대한 규정이 있고, 레 18장만의 고유한 금령으로는 이복누이, 동복누이, 손녀 또는 외손녀, 의붓누이, 고모, 이모, 백(숙)모, 한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에 대한 규정이 있다. 반면, 고대 서아시아 법전에만 있는 고유한 개별 금령은 친딸(CH §154; HL §189b)에 대한 금령이다.

14) 본 논문은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간음과 강간에 관한 성 금령 연구는 추후에 다루고자 한다.

1) 혈족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

(1) 아버지의 여인에 관한 규정

아버지의 여인에 대한 금령은 레위기(레 18: 7, 8; 20: 11), 신명기(신 22: 30; 27: 20), 함무라비 법전¹⁵⁾(CH §157,¹⁶⁾ 158¹⁷⁾), 중세 아시리아 법¹⁸⁾(MAL §46),¹⁹⁾ 히타이트 법(HL §189a,²⁰⁾ 190)²¹⁾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함무라비 법전과 히타이트 법은 레 18장 7-8절과 같이 친어머니와 아버지의 여인에 대한 각각의 금령을 포함하고 있다.

레 18장은 아버지의 여인에 대한 금령을 두 번(레 18: 7, 8) 명령한다. 레 18장 7절 **לֹא תִגְדַּלְתֶּם** (베에르바트 임메카 로 테갈레/네 어머니의 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은 친어머니에 대한 금령이고, 레 18장 8절 **לֹא תִגְדַּלְתֶּם אֶת־אִשְׁת־אָבִיכֶם** (에르바트 에쉐트-아비카 로 테갈레/네 아버지의 여인의 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은 아버지의 다른 아내에 대하여 금하고 있다. 아버지의 여인에 대한 아들의 성범죄는 레 20장 11절 **כִּי יִמְצָאוּ אֶת־אִשְׁת־אָבִיו** (모트-유메투 쉐네헴 데메헴 밤/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여인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한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벗은 몸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 22장 30절은 아버지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לֹא־תִקַּח** 로-이카흐)과 아버지의 벗은 몸(**כִּנְיָ אִבִּי** 커나프 아비

15) 함무라비 법문서의 음역(transliteration)은 R. F. Harper(ed.), *The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4)과 W. W. Hallo(ed.), *The Context of Scripture II: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e World*, (Leiden, New York: Brill, 1997)를 참조하였다.

16) CH §157 만일 어떤 사람이 부친의 사후 그의 어머니와 동침하면 그들은 둘 다 불태울지니라.

17) CH §158 만약 어떤 사람이 부친의 사후 자녀를 낳은 첫 부인의 품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부모 재산에서 상속권을 박탈당할지니라.

18) 중세 아시리아 법문서의 음역은 G. R. Driver/J. C. Miles (eds.), *The Assyrian Laws*,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35)를 참조하였다.

19) MAL §A 46 남편이 죽은 어떤 여인이 남편 사후 그녀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만약 생존시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서면으로 어떤 증서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선택하는 그녀의 아들 중 하나와 거할지니라. 그리고 만약 그녀와 결혼하려는 그녀 남편의 아들이 있다면 그가 그녀를 공양할 것이며, 그녀 자신의 아들들은 그녀를 돌보지 않을지니라.

20) HL §189a [takku LÚ-iš] api [el=pat] annaš=<š>aš katta waštai ħurkil ([만약] 어머니와 성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결합이다).

21) HL §190b 만약 어떤 사람이 계모와 성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결합이다.

브)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한다. 신 27장 20절에서는 이들을 저주한다(אָרַר אֲבִיבְרָה). 이는 아버지의 벗은 몸(בְּרִיבְרָה קְנִיבְרָה)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함무라비 법전(CH §157)은 “부친의 사후에(*warki*)²²⁾ 그의 어머니와 동침하면” 아들과 어머니를 모두 화형(火刑)에 처하고, CH §158은 “부친의 사후, 자녀를 낳은 첫 부인의 품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부모 재산에서 상속권을 박탈당한다”는 법을 갖고 있다.²³⁾ 아들이 그의 어머니와 동침하는 사례에 있어서, CH가 부친(父親)이 사망(死亡)할 경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한때는 이런 관행(慣行)이 용납 또는 묵인되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아버지의 사후(死後) 계모와의 관계에서, 상속 금지의 형벌을 규정하기 전에 “만일 그녀가 자녀를 낳았다면”이란 조건을 첨가한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고, 계모가 자녀를 낳지 않았을 경우에, 그녀의 의붓아들이 계모를 취(娶)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히타이트 법은 HL §190b-c에서 이런 개념을 보다 솔직하게 표현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계모와 성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결합이다(*hukel*)”. 이 규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사후, 그의 계모를 취할 수도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²⁴⁾ 더욱 중요한 것은 남자 친척들의 삶의 신분은 *hukel*을 결정하는 조건 중의 하나이다. HL은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형벌을 제안하는데, 자유민의 *hurkel*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왕에 의한 감형(HL §§187-188), 그리고 노예에 대해서는 추방과 대속의 제물(HL §196)이 있다. 이처럼 형벌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주 사이에도 편차가 있다.

MAL §46은 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사후에, 계모를 배우자로 맞이

22) 여기서 *warki*는 문맥상 남편이 죽은 후이거나 또는 집을 떠나있을 때를 암시한다.

23) CH §158의 이러한 유형은 보다 초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항(反響)되는 듯 하다.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성교를 갖은 르우벤(창 35: 22)은 야곱에 의해서 최고 상속자의 위치에서 추방당한 대(창 49: 4).

24) 참조. D. T. Stewart, *Ancient Sexual Laws: Text and Intertext of the Biblical Holiness Code and Hittite Law*, (Ann Arbor, MI: UMI, 2000), 313-315쪽: 이것은 HL §194c에서 설명되지 않은 사례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자유민 여인과 동침할 수 있다.

하여 그녀의 생계(生計)를 해결해 주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그녀의 집’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녀 남편의 집 일 것이다. ‘그녀의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Ass. *īštu bitiša lā tūššā*)라는 진술은 그녀가 남편의 가족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바꾸지 않겠다는 그녀의 선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MAL §46은 다른 법전의 근친상간 처벌 규정과는 달리, 남편이 죽었으나 과부(*almattu*)가 되지 않도록, 여성을 돌보는 부양(扶養)의 주제로 진전(進展)된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2) 며느리에 관한 규정

레 18장 15절은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와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금령은 이 여인이 ‘네 아들의 아내’(אִשְׁתּוֹ בֶּן־הָאָדָם 에셰트 빈카 히)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형벌은 레 20장 12절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 모두 죽이라는 명령과 이는 이들이 문란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명시한 후,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וְאִישׁ אֲשֶׁר יִשְׁכַּב אִתָּהּ וּמִתּוֹ שָׁנָה תָּבֹל עִוְשׁ דָּם הָאָדָם בָּם 베이쉬 아셰르 이슈카브 에트-칼라토 모트 유머투 쉐네헴 테벨 아수 데메헴 밤).

한편 함무라비 법(CH §§155, 156)에서 CH §155²⁵⁾는 어떤 남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선택하고, 그 아들이 그 여인과 육체적인 성 관계를 가진 후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성행위를 한다면, 그 아버지는 강물에 던져지는 형벌에 처할 것을 명시한다. 반면, CH §156²⁶⁾은 아들이 그 신부와 육체적인 성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아버지가 이 여인과 성 관계를 가지면, 시아버지는 그 여인에게 은 30세겔을 줄 것이고, 이 여인이 친정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돌려주며, 이 여인이 선택하는 어떤 남편과 결혼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러한 함무라비 법의 규정은 성서의 법보다 더 자세한 상황을 다루고

25) CH §155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선택하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육체로 안 뒤 그가 그 여자와 누운 것을 그들이 현장에서 잡으면 그들은 그 남자를 강물에 던질지니라.
26) CH §156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선택하고 그의 아들이 아직 육체적으로 그녀를 알지 않았는데도 그가 그 여자와 누웠다면 그는 은 30세겔을 달아서 그녀에게 줄 것이며 그는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가져온 것은 무엇이든지 돌려줄 것이며 그녀가 선택하는 어떤 남편과 결혼할지니라.

있지만, 여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레 20장 12절에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모두 사형에 처하는 반면, 함무라비 법은 시아버지만 물 속에 던지는 처벌을 하고, 며느리가 미완성(未完成)의 결혼(inchoate marriage)일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만드시 죽일지니라’(מֹת וְיָמָוּ מוֹת יוּמָתוּ)가 유대법의 전통적 특색²⁷⁾임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성의 착취 대상이던 여성들이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책임적 존재가 되었다는 면에서 성서법의 향상된 일면²⁸⁾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남자 형제의 아내에 관한 규정

남자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예는 레위기(18: 16; 20: 21), 신명기(25: 5), 히타이트 법(HL §193, 195a), 그리고 중세 아시리아 법(MAL §33)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상응(相應)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 특이(特異)하다. 레 18장 16절은 형제의 아내와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이 여인은 네 형제의 벗은 몸이기 때문에 금지한다(וְאִתּוֹת אֲשֶׁת־אָחִיךָ לֹא תִגְדָּל עִמָּךְ הָאִשָּׁה הַזֹּאת אֲשֶׁר לְאָחִיךָ לֹא תִגְדָּל עִמָּךְ 에르바트 예췘트-아히카 로 테갈레 에르바트 아히카 히). 한편 레 20장 21절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לָקַח 라카흐)은 더러운 일(וְהָיָה נִדָּה 히)로서, 이러한 행위는 형제의 벗은 몸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들은 무자(無子)의 형벌(וְהָיָה אִי וְאִמּוֹ אֲרִיִּים 아리림 이호유)을 받는다고 선언한다. 반면, 신 25장 5절은 형제가 죽은 후 그 아내와의 결혼을 다루는 시형제(媿兄弟)법²⁹⁾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시형제 결혼은 형제들과 남자 친척이 한 형제의 사후(死後)에 그 과부

27) E. Otto, "False Weights in the Scales of Biblical Justices? Different Views of Women from Patriarchal Hierarchy to Religious Equality in the Book of Deuteronomy," in *Gender and Law in the HB and the ANE*, V. H. Matthews(eds.), (JSOTSup 26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28-129쪽.

28) D. Daube, "Biblical Landmarks in the Struggle for Women's Rights," *Juridical Review* 23 (1978), 177-180쪽; A. Philips, *Ancient Israel's Criminal Law: a New Approach to the Decalogue*, (Oxford: Basil Blackwell, 1970), 110-112쪽; 더베와 필립스는 간통법에 대한 여자들의 책임은 신명기적 혁신이라고 주장한다.

29) 신 25: 5 형제가 등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를 아내로 취하도록 허용(許容)하는 제도이다(창 38: 8-9; 신 25: 5-10; 룻 3: 12-13). 신 25장 5절은 “만약 형제가 함께 거한다면” 남편의 형제에게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도록 허락한다. 더욱이 이 형제들은 만일 그들이 기꺼이 수치(羞恥) 제의를 당하고자 하면,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³⁰⁾ 아마도 신명기는 시형제에게 그의 첫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도록 허락한다. 이것은 특히 취약(脆弱)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여자의 법적, 경제적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히타이트 법(HL §193, 195a)은 레 18장 16절과 신 25장 5절의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어떤 남자가 죽은 경우, HL §193³¹⁾에서는 그의 형제가 과부가 된 그의 아내를 취할 수 있고, 만약 그 형제도 죽으면 그 아버지가 이 과부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도 죽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그 여자를 취할 수 있다. 반면, 그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 HL §195a³²⁾는 레 18장 16절과 같이 그 형(제)수와 성행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히타이트의 “시형제 결혼”은 사라져 가는 이스라엘 제도와 유사하며, 그 순서는 자아(Ego)의 형제, 아버지, 부계의 사촌(또는 부계의 삼촌)이다. 중세 아시리아 법에서도 시형제 결혼과 유사한 11세기 메소포타미아의 증거를 볼 수 있다. MAL §33은 과부가 시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시아버지는 이 여인을 남편의 형제들에게 줄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MAL §46에서는 아버지가 이 과부를 돌볼 아들이 없을 경우, 아들의 과부를 그 스스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그 과부 또한 아들이 없을 때, 그 과정은 실패로 된다. 이런 경우, 이 여인은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양자택일로, 만일 과부가 남편이 죽은

30) D. A. Leggett, *The Levirate and Goel Institution of the Old Testament*, (Cherry Hill: Mack Publishing Company, 1974), 55-62쪽: 레겟트는 신발을 벗기는 의례가 마지못해 하는 시형제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며, ‘이 의례는 그렇다면 일종의 놓아주기 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혼 집행의 의미보다는, 분배되지 않는 재산에서 미망인 자신의 몫에 대한 일시적 사용권을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31) HL §193 [만약] 어떤 사람이 부인이 있는데 그가 죽으면 그 형제는 그의 과부를 부인으로서 취할 수 있다. [만약 형제가 죽으면] 그의 아버지가 그녀를 취할 수 있다. 후에 그의 아버지도 죽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그가 취한 그 여자를 취할 수 있다.

32) HL §195a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형제의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 결합이다.

후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을 택한다면, 이 여인의 의붓아들 중 하나가 이 여인과 결혼하여 이 과부를 부양(扶養)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시형제 결혼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신명기와 히타이트 법(HL)과 중세 아시리아 법(MAL)의 시형제 혼인 법들은 부계 가족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법 이면에, 과부가 된 여인의 취약한 상황에서 그녀를 남편 가계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이익을 보장할 뿐 아니라, 그녀의 법적 경제적 위치를 개선하려는 제도였던 것으로 사료된다.³³⁾ 신명기의 신 벗기는 의례는 수혼 제도의 약화와 더불어 미망인의 해방을 시사하며, P의 상속 순서에 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여인들의 해방을 위한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딸에 관한 규정

레 18장의 가족 안에서의 불법의 성 관계를 금지하는 금령에는 친딸에 대한 개별적인 목록이 빠져있다. 비록 레 18장 17절에서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함께 성적으로 취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친딸에 대한 금령은 개별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함무라비 법(CH §154)³⁴⁾과 히타이트 법(HL §189b)³⁵⁾은 친딸에 대한 목록을 명시한다. 함무라비 법은 아버지가 친딸과 성행위를 했을 경우, 그 도시로부터의 추방을 선고하고, 히타이트 법은 자신의 딸과 성 관계를 갖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결합이다(*hurkil*)'라는 금지 규정만을 갖는다.

함무라비 법과 히타이트 법에서 금지된 아버지와 딸과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은 레 18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제시한다.³⁶⁾ 노이펠트(E. Neufeld)와 같은 일부 학자는 딸이 빠진 것은 오류나 생략에 의한 것으로 주장한다.³⁷⁾ 한편 엘리거(K. Elliger)는 딸에 대한 금령이 처음에는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33) D. A. Leggett, *윗글*, 55-62쪽.

34) CH §154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의 딸을 안다면 그들은 그 남자를 도시에서 추방할지니라; Robert Francis Harper (ed.), *윗글*, 54쪽.

35) HL §189b *ták-ku LU-aš DUMU.MUNUS-aš-ša kat-ta wa-aš-ta-i hu-urki-il*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딸과 성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결합이다).

36) 참조 조 미형, *윗글*, 120-146쪽.

37) E. Neufeld, *Ancient Hebrew Marriage Laws: With Special References to General Semitic Laws and Customs*, (London: Longmans, 1944), 191-192쪽.

그 금령이 본문 비평상 중자 탈락(haplography)에 의해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³⁸⁾ 또한 카르다시아(G. Cardascia)는 목록에서 딸이 빠진 것은 의도적이며, 이러한 행동이 비난받지 않는 정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⁹⁾ 반면,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딸의 부재(不在)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만약 딸이 처녀성을 잃으면 이 딸은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되고, 아버지는 경제적 손해를 갖게 되는 이유⁴⁰⁾에서 딸의 목록이 빠졌다고 말한다.

레트레이(S. Rattray)는 부녀 상간 금령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하여 레 18장 6절의 **וְאִשָּׁרָא**(쉐에르 베사로)와 레 21장 2-3절의 **אִשָּׁרָא בְּיָמֶיךָ**(세에르 학카로브)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레 21장 2-3절의 “가까운 살붙이”(בְּיָמֶיךָ אִשָּׁרָא 세에르 학카로브)로 제시된 목록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않은 누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딸은 레 18장 6절에서 이미 **אִשָּׁרָא**(쉐에르)를 통해 금지되어 있었다.⁴¹⁾ 논자 또한 딸이 레 18장 6절의 “가까운 살붙이”(וְאִשָּׁרָא כָּל-שֵׁעָר בְּסָרוֹ)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한다. 레 18장의 목록에서 딸의 부재(不在)의 이유는 부권(父權)의 소유권과 도덕성에 연관지어 말할 수 있으며, 딸의 미래에 결혼할 남편에 대한 고려일 수 있다. 딸과의 성행위는 딸의 순결과 명예를 보호해야 하는 아버지의 책임과 명예에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딸과의 성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었고, 레 18장 6절의 ‘그의 가까운 살붙이’(וְאִשָּׁרָא כָּל-שֵׁעָר) 안에서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본다.

그 밖에 LL §33⁴²⁾와 LE §31⁴³⁾ 등에는 딸에 관한 사례들이 있으나,

-
- 38) K. Elliger, *Leviticus*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4), (Tübingen: Mohr/Paul Siebeck, 1966), 234쪽.
 - 39) G. Cardascia, “Égalité et inégalité des sexes en matière d’atteinte aux moeurs dans le Proche-Orient ancien,” *Die Welt des Orients* 11 (1980), 7-16쪽.
 - 40) 참조. T. Frymer-Kensky, “Law and Philosophy: The Case of Sex in the Bible,” *Semeia* 45: *Thinking Biblical Law* (1989), 89-102쪽; N.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134-135쪽.
 - 41) S. Rattray, “Marriage Rules, Kinship Terms and Family Structure in the Bible,” *SBLSP* 26 (1987), 537-544쪽.
 - 42) LL §33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의 처녀 딸이 성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녀가 성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면 그는 은 10세겔을 달아서 지불할지니라.
 - 43) LE §31 만약 어떤 사람이 여자 노예의 처녀성을 빼앗을 때, 그는 은 1 미나의 1/3을 갚을지니라; 여자 노예는 그녀의 주인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들은 친딸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타인의 딸에 대한 내용이므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간음과 강간의 항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인척과의 성행위와 결혼에 대한 금령: 두 여인과의 성행위에 관한 규정

레 18장은 가족인 두 여인과의 성행위를 17절과 18절에서 금지한다. 17절⁴⁴⁾의 상반절(레 18: 17a)은 한 여인과 그 딸과의 성행위를, 후반절(레 18: 17b)은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와의 성행위를 금지한다. 18절⁴⁵⁾은 아내와 그 자매와의 결혼을 금지한다. 레 20장은 레 18장에서 금지하는 한 여인과 그 딸, 그리고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 그리고 아내와 그 자매와의 성행위와 결혼에 대한 형벌을 명시하지 않는다. 반면에, 레 20장 14절은 장모와의 결혼은 악행(**רָעָה**)으로 단언하며, 사위와 이 여인들 모두에게 화형을 선고한다. 신 27장 23절⁴⁶⁾도 장모와 성 관계를 하는 자를 저주(**רָרַע**)한다.

한편 히타이트 법에는 두 여인에 대한 네 가지 관련 조항이 있다. 첫째, HL §191⁴⁷⁾은 남자 자유인이 동일한 어머니를 가진 자유인 자매들과 그 어머니와 성행위 하는 것을 규제한다. 히타이트 법은 여기에서 성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한다. 자매들과 그 어머니와 성교한 장소가 각각 다른 지역이라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가 이 여인들의 관계를 알았다면,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둘째, HL §194⁴⁸⁾는 성행위가 허락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44) 레 18: 17 너는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그 여인의 손녀 또는 외손녀를 취하여 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 이들은 그 여인의 친족이다. 이것은 악행이다.

45) 레 18: 18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자매를 취하지 말라. 아내와 더불어 그 자매의 벗은 몸을 드러내므로 아내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46) 신 27: 23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이다.

47) HL §191 ták-ku LÚ EL-LUM a-ra-u-wa-an-ni-uš an-na-ne-[ku-uš an-na-aš-ma-an-na] ú-en-zi ka-a-aš ta-ki-ia ut-ne-e-k[a-a-aš-ša ta-ki-ia] ut-ne-e Ú-UL ḥa-ra-a-tar ták-ku ša-ni-ia [pé-di nu ša-ak-ki] ḥu-ur-ki-il ([만약] 어떤 자유인 남자가 동일한 어머니를 가진 자유인 자매들과 그들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한 사람은 한 지역에, 다른 사람은 다른 지역에 경우라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같은 지역에서 이 성행위가 일어나고, 그가 이들의 관계를 알았다면,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성행위이다.)

48) HL §194 ták-ku LÚ-EL-LAM GÉME.ḤI.A-uš an-na-né-ku-uš an-na-aš-ma-an-na ú-en-zi Ú-UL ḥa-ra-tar ták-ku a-ra-u-wa-an-ni-in AT-ḤU-TIM še-eš-kán-zi Ú-UL ḥa-ra-tar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남자 자유인이 동일한 어머니를 가진 여자 노예들과 그들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범죄가 아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형제들이 한 자유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자 노예나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첫 번째 경우, 한 남자와 관계가 있는 여성(어머니와 딸들)과의 성행위가 가능한 것은 이 여인들의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우는 형제들(복수)이 한 자유인 여인과의 성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말한다. 이것은 상대(相對) 여성이 결혼이나 약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마지막 경우는, 부자(父子)가 동일한 여자 노예나 창녀와의 성행위가 가능한 것은 여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창녀 또한 직업적으로 성을 파는 여자로서 이러한 예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

셋째, HL §195b⁴⁹⁾는 한 여인과 그 딸과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195c는 아내와 장모, 그 자매와 성행위를 금지한다. 이것은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레 20장 14절(여인과 그 어머니)과 레 18장 18절(아내와 그 자매)의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넷째, HL §200a⁵⁰⁾는 반 자유민 아르누왈라스 여인과 성행위를 하고 그 어머니와 성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두 자매와의 성행위에 대한 규정은 레 18장 18절과 HL §191에서는 허락되지 않지만, 그 이전(以前)에 야곱의 결혼에서는 허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창 29: 21-30). 어머니와 그 딸과의 성행위는 레 18장 17절, 20장 14절과 HL §191에서 금지된다. 그러나 HL §§194, 200은 두 명의 노예 또는 포로인 여자들에게까지는 이 금지를 확장하지는

ták-ku GÉME-aš na-aš-ma MUNUSKAR.KID-aš kat-ta ad-da-aš Û DUMU-ŠU še-eš-kán-zi Ú-UL ḥa-ra-tar! (만약 어떤 남자 자유인이 동일한 어머니를 가진 여자 노예들과 그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만약 형제들이 한 자유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자 노예나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49) HL §195b takku LÚ-aš MUNUSarauwanin ḥarzi ta DUMU=ši-ya šaliga, ḥurkil (KBo 6.26 iii 50-52) (만일 어떤 남자 자유인이 여자 자유인을 부인으로 삼고 그 딸을 성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 결합이다.)

50) HL §200a ták-ku ar-nu-wa-la-an ku-iš-ki kat-ta še-eš-ki-iz-ni an-na-aš-ša-an ne-k[a-aš-ša-an-na ú-en-zi] Ú-UL ḥa-ra-tar (만약 어떤 사람이 아르누왈라스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한 그의 어머니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않는다. 성서는 두 형제가 미혼인 여자와 성 관계를 갖는 상황을 논의하지 않고 있으나, 형제의 결혼한 아내와의 성 관계는 무자(無子)의 형벌을 받는다(레 18: 16; 20: 21; 비교. HL §195).

특히 “두 여성”에 대한 규정에서 성서와 히타이트 법은 놀라운 유사점을 드러낸다.

HL §195b	takku LÚ-aš ^{MUNUS} arauwanin ḫarzi ta DUMU=ši=ya šaliga, ḫurkil (KBo 6.26 iii 50-52). 만일 어떤 남자 자유인이 여자 자유인을 부인으로 삼고 그 딸을 성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 결합이다.
레 18: 17	וְאִשָּׁה אֶל־אִשְׁתּוֹ לֹא תִגְדֹּל אֶת־בְּתוּלַת בְּתוּלַת בְּתוּלָה לֹא תִגְדֹּל לְגִילֹת עַרְוֹתָהּ שְׂאֵרָהּ הִנָּה זָמָה הִיא 너는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그 여인의 손녀 또는 외손녀를 취하여 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 이들은 그 여인의 친족이다. 이것은 악행이다.

우선 첫째, 어머니와 딸을 금지하면서, 레 18장(H)과 HL이 공유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여성 개념이다. 레 18장은 어머니와 딸의 금지를 3세대(여인의 손녀나 외손녀)까지 확장한다. 둘째, 이 성행위에 대해 히타이트 법은 ḫurkel(성범죄)로, 레 18장은 זָמָה(짐마/악행)로 진단한다.

HL §195c와 레 18장 18절과 20장 14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HL§195c	ták-ku DUMU.MUNUS-SÀ ḫar-zi ta an-ni-iš-ši na-aš-ma NIN-iš-ši ša-li-i-ga ḫu-u-ur-ke-el [만약] 그가 그 딸을 부인으로 삼고 그 어머니나 그 자매를 성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 결합이다.
레 18: 18	וְאִשָּׁה אֶל־אִשְׁתּוֹ לֹא תִגְדֹּל לְגִילֹת עַרְוֹתָהּ עַל הַבְּתוּלָ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자매를 취하지 말라. 아내와 더불어 그 자매의 벗은 몸을 드러내므로 아내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레 20: 14	וְאִישׁ אֲשֶׁר יִקַּח אֶת־אִשָּׁה וְאִת־אִמָּהּ זָמָה הִיא בְּאֵשׁ יִשָּׂרֵף אֹתוֹ וְאִתְּהֶן וְלֹא־תִהְיֶה זָמָה בֵּת כִּכְבֹּם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함께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서 악행이 없게 하려함이니라.

아내와 장모 또는 자매에 해당하는 히타이트 법(HL)의 두 여성 규정은 레 18장과 20장(H)에서 두 법규로 분리된다. 아내와 장모와의 성

관계에 대해 히타이트 법은 *hurkel*, 레 20장에서는 *ḫur*로 각각 선언된다. 한편 아내와 그 자매와의 결혼과 성행위를 금지하는 레 18장 18절은 금지 이유를 명시한다. 즉 그들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여기서 여성의 입장은 야곱의 아내들을 회상케 한다(창 29-30장).⁵¹⁾ 레 18장(H)은 여기에 예외를 허용한다. 즉 아내가 죽은 후에는 아내의 자매와 결혼할 수 있다. 따라서 모계의 법적 자매와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상간 규정은 영구적이지 않다. 이 법은 아내가 살아있는 경우와 죽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레 18장(H)과 히타이트 법(HL)⁵²⁾ 둘 다 생존시에는 결혼을 금지하고 사후에는 그것을 허락한다. 레 18장(H)은 모계의 법적 자매에 대한 근친상간 예외를 허락하는 반면, 예외를 극소화하는 H의 일반적 접근과 일관되게, 노예와 반 자유민 아르누왈라스 여인에 대한 히타이트의 면제(HL §194a, 200Aβ)와 같은 경우는 없다.

요약하면, 레 18장(H)과 히타이트 법(HL) §§192-195는 몇 가지 본질적인 유사성과 법적 문체를 갖는다. 첫째, 두 여성 개념(*topos*)을 공유한다. 둘째, 아내와 그 딸과의 성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이 규제를 아내와 그 어머니에 대한 법으로 재 규정하여 금지한다. 넷째, 한 남자와 두 자매 모두 살아있을 때 그들과의 성행위는 금지된다. 다섯째, 레 18장(H)과 히타이트 법(HL)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진단적(診斷的) 명사 문장을 사용한다.

한편 레 18장(H)과 히타이트 법(HL) §§192-195는 서로 다른 점을 나타낸다. 레 18장 17절이 HL §195b와 유사점을 나타내고, 레 18장 18절이 HL §192와 195c와 부분적으로 유사할지라도, 레 18장(H)은 법을 지키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HL §§192-195 보다 수사적이다. 예를 들어, 레 18장 17절은 한 여인과 그 딸,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와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이는 그들이 그 여인의 친족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한다. 또한 레 18장 18절은 아내와 그 자매와의 결혼과 성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는 그들이 서로 질투

51) D. T. Stewart, *윗글*, 331쪽.

52) HL §192 만약 어떤 사람의 부인이 죽으면 그는 [부인으로서] 그녀의 자매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한다.

또한 성 규제를 확장하려는 경향과 일치하여, 레 18장(H)은 두 여성 규정을 꼭 들만이 아니라, 세 세대에 적용시킨다(여인의 손녀나 외손녀). 레 18장(H)은 사회적 계층에 대하여 이런 규정들에 대한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레 18장(H)은 히타이트 법 전통의 어떤 전승자와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레 18장(H)과 히타이트 법(HL)의 유사점들은 가볍게 간과할 수 있는 특성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⁵³⁾ 레 18장(H)의 편/저자는 법적 개념에 대하여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고대 서아시아 배경에서 전통(傳統)과 씨름하며, 그것을 변형(變形)시키고, 이스라엘 신앙의 고유성을 부각시킨 법 제정자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3.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성 금령에 관한 유사성과 상이성

1) 구조 비교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유사성은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성범죄와 처벌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으며,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처벌 규정들이 있다는 점이다.⁵⁴⁾

고대 서아시아 법전들은 그 전문(前文)과 후문(後文)에 신의 법적 의지와 신에 근거한 제정임을 밝히고 있지만, 대개는 왕의 제정으로서 왕의 사법권을 나타낸다. 성에 관한 법규는 간음과 강간을 다루는 형법이지만,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민법 속에 삽입되어 있다. 이처럼 민법과 형법의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는 고대 서아시아 법전과는 달리 레위기 법의 구조상 특징은 율법이 이야기 전체 안에 엮여진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율법과 이야기의 주체인 하나님은 법의 수여자인 동시에 최종 권위자이다.

법의 형식에 있어서 고대 서아시아 법은 대체로 결의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레 18장은 명령과 금령으로 구성된 필연법이고, 레 20장의 결의 법 형식으로 공포된 것들도 그 기반은 금령적 필연법으로 구성되어

53) 참조. D. T. Stewart, *윗글*, 337쪽.

54) 김 영진, “구약성서 연구에 있어서 고대근동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9집(2000), 278쪽.

있다.⁵⁵⁾ 특히 레 18장 7-16절의 “לא תגלה ערותי(로 테갈레 에르바트: ~의 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 10계명의 형식은 구약 성서에서도 독특한 필연법이다.⁵⁶⁾ 고대 서아시아와 대조되는 또 다른 법의 형식은 법의 시행 이유를 밝히는 동기절의 사용이다. 설형문자법에서 동기를 밝힌 법은 극히 드물고, 다만 조건적 규정들 가운데 나타나지만, 구약의 율법에는 조건적, 비 조건적 규정 양쪽에 모두 이 동기를 밝히고 있다. 또한, 설형문자법에서 동기절들은 주요 요소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구약 율법의 동기절들은 새로운 정보를 첨가함으로써 법규정 전체를 확증해준다.⁵⁷⁾ 레 18장의 동기절은 성행위 규제의 이유와 성범죄의 속성을 분류하여 명기함으로써, 개인의 윤리적 및 양심적 의무를 부과했다.

고대 서아시아에서 성적인 문제는 신분 사회에서 대두되는 광범위한 입법적 주제들로 나타난다. 에쉬눈나 법과 수메르 법은 강간을 소유의 문제로 다루고, 함무라비 법전은 결혼, 혼전의 성교, 간음, 강간, 이혼, 그리고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법들에서 여성들은 이전의 메소포타미아 법전에서보다 높은 신분을 갖는 한편, 성의 소유권 안에서 수치와 명예가 핵심 문제로 대두된다.⁵⁸⁾ 중세 아시리아 법은 강간, 간음, 그리고 동성애 성교를 기재하고, 명예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 중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정함(cleanness)과 성적 정결(purity)을 다루지 않는다. 히타이트 법 또한 결혼을 재산(소유)의 관점에서 다루며, 근친상간, 시형제 결혼, 강간, 선택적 수간 등의 성 관련 조항이 있다. 한편 히타이트 자료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결의 요소는 어떤 특별한 항목이 신체적으로 제의적, 우주적인 끈경에 처한다는 점에서, 다른 고대 문헌에 비해 이스라엘 정결 자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발전된 음식법, 넓은 유형의 신체적 정결법, 무엇보다 성서에서의 윤리적 정결의 의미는 히타이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55) 참조. J. Milgrom, *Leviticus 17-22*, (New York · London · Toronto: Doubleday, 2000); K. Elliger, *윗글*.

56) 참조. 조 미형, *윗글*, 120-146쪽.

57) 참조. B. A. Levine, *Leviticus לאִקָּרָא: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 · New York ·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G.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79); J. Milgrom, *윗글*; K. Elliger, *윗글*; M. Noth, *Leviticus*, Trans. J. E. Anders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65).

58) 참조. G. R. Driver/J. C. Myles (eds.), *윗글*; G. R. Driver/J. C. Myles, *윗글*; M. Malul, *윗글*.

다.⁵⁹⁾ 따라서 고대 서아시아의 성에 관한 공통 금기들은 성 문제에 관하여 초점을 모으되, 재산, 소유권, 상속권, 가부장제, 그리고 신분 사회의 질서 유지에 충력을 기울이는 반면, 정결에 관한 구조는 희미하고, 윤리/도덕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다.

“시내산 전승 단락”(출 19: 1-민 10: 10) 안의 성결법전에 위치한 레 18장은 출 19장 5-6절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기반(基盤)으로 선포되고 있다. 가정과 사회 안에서 불법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레 18장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다”(레 18: 4-5)라는 명령으로 출발한다. “가까운 친족”(כַּלְכָּל אֲשֶׁר קָרִיב) 안에서의 근친상간을 금하는 이 금령은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의 특별하고 중요한 성금령(性禁令)이다. 불법의 성행위로 말미암은 가족 공동체의 붕괴는 야훼가 준 땅에서 토해냄을 초래하여, 결국 사회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온다. 레 18장 성행위 금령의 주제는 레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의 명령과, 레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는 훈계의 틀 안에서 가정과 사회의 정결(淨潔)과 성결(聖潔)을 강조하고 있다. 레 18-20장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는 표제(레 18: 2-5; 19: 2; 20: 7-8)와 결론의 윤리/도덕적 축구의 반복(레 18: 24-30; 19: 37; 20: 22-26)으로 세 장이 연결되어 삼각(페디멘탈) 구조를 이룬다. 레 18장과 20장은 양끝에서 성범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금령과 형벌을 각각 다루지만, 그 정점(頂點) 레 19장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의 거룩과 이웃 사랑, 정직한 거래와 공정성에 관한 제의적인 법과 도덕적인 법을 함께 수여한다. 성결법전(H)은 이것을 레 18, 19, 20장의 삼각 구조로 배치하여, 레 19장을 정점으로 강조하고, 다시 레 19장은 출 20장의 십계명을 더 확대시키고 더 상세하게 재해석한다. 따라서 윤리적, 제의적, 사회적 정결의 요소로 이루어진 레 18장과 20장의 금령과 처벌과 훈계는 레 19장의 거룩(성결)을 이루려는 그 목표와 이상(理想)에 기여한

59) 참조: D. T. Stewart, 訳; G. R. Driver/J. C. Miles (eds.), 訳; H. A. Hoffner Jr. (ed.), 訳; R. F. Harper (ed.), 訳.

다.⁶⁰⁾ 법은 처벌보다는 치유와 생명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야훼-이스라엘 관계의 중요한 특성이 곧 “거룩”에 있음을 밝혀준다.⁶¹⁾ 따라서 가정과 공동체의 삶은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임재(현존)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정은 거룩을 실천하는 장(場)이어야 함이 강조된다.

2) 내용 비교

레 18장은 4세대로 구성된 확장된 가족 구조 안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근친상간을 함축적으로 금지하면서, 부인의 벗은 몸은 그 남자 자신의 벗은 몸과 같다는 동기절로 결혼의 계약 관계를 절대시한다. 아버지의 여인에 대한 성 금지 규정은 함무라비 법전(CH), 히타이트 법(HL), 중세 아시리아 법(MAL)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함무라비 법전은 부친의 사후에 모자간의 성 관계에 대하여 화형(CH §157)으로 처벌하고 계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법을 갖고 있다.⁶²⁾ 한편 히타이트 법은 부친의 사후 그의 계모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유민 여인과 동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적인 법이다. 더 나아가, 중세 아시리아 법은 과부가 된 계모를 배려하여 여성을 부양(扶養)하는 주제로 진전시킨 사례를 나타낸다.

한편 레 18장 7, 8절은 아버지의 여인을 금지하는 이유로 ‘이는 네 아버지의 벗은 몸이다’라고 명시한다. 레위기에서 아버지의 여인과의 성행위는 부권(父權)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패륜으로(삼하 16: 21-22; 왕상 2: 22), 이런 경우 주어지는 형벌은 죽음이었다(레 20: 11).

함무라비 법전(CH §§155, 156)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성행위에 대해 시아버지를 강물에 던지는 형벌을 규정하고, 아들이 택한 신부를 범했을 때는 경제적 문제로 처리하고 여인에게 결혼 선택의 자유를 주는

60) 참조. M. Douglas,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erpretation* 53(1999), 341-364쪽; M. Douglas,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61) 참조. 김 중은, 원글: 정 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서울: 한들출판사, 1999).

62) 참조. R. F. Harper (ed.), 원글: T. Meek, 원글.

것을 규정한다. 이에 반해 레 20장 12절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모두 사형으로 처벌한다. 레 20장 12절에서 며느리와의 성행위는 תְּבֵל(테벨/문란한 일)로 분류된다. 이 תְּבֵל은 성 금령에서 레 18장 23절과 20장 12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이다. 즉 사람과 동물의 부적당한 혼합(레 18: 23)과 며느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씨(רֵעַ 제라)의 혼합은 תְּבֵל로 불리고 있다. 수간(獸姦)은 종(種) 간의 혼란이며, 사회적 역할의 혼란이다. 마찬가지로 레 20장 12절은 며느리와의 성행위를 ‘문란한 일’로 규정하고 아버지의 씨(רֵעַ)와 아들의 씨(רֵעַ)가 섞이는 혼란을 초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남자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예는 레위기(18: 16; 20: 21), 신명기(25: 5), 히타이트 법(HL §193, 195a), 중세 아시리아 법(MAL §33)에서 찾아볼 수 있다. 히타이트 법의 “시형제 결혼”은 레 18장 16절과 신 25장 5절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한편 중세 아시리아 법에서는 다른 법전에서 언급되지 않는 ‘의붓아들’이 과부를 부양하는 가장 약화된 순서로 나온다. 이렇게 각각의 법에 명시된 시형제 결혼은 그 범위와 의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히타이트 법은 범위에 있어 가장 포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신명기와 성결법전은 각기 제한점을 제시한다. 신명기와 히타이트 법과 중세 아시리아 법의 시형제 혼인법들은 가부장제의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과부가 된 여인의 법적 경제적 위치를 개선하고자 한다.

레 18장에 친딸에 대한 금령이 개별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함무라비 법전(CH §154)과 히타이트 법(HL §189b)은 친딸에 대한 목록을 명시한다. 함무라비 법은 친딸과 성행위를 했을 경우 아버지에게 그 도시로부터의 추방을 선고하고, 히타이트 법은 hurkil의 금지 규정만을 갖는다. 이러한 조항은 어머니와 아들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 어머니와 아들 모두 화형에 처하는 법(CH §157)과, 아들이 약혼자와 성행위를 한 후에 그 약혼자와 성행위를 한 아버지가 물 속에 던져지는 형벌(CH §155)과 비교해 볼 때 관대한 처벌이다. 그러나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이 아버지와 딸과의 성행위에 대한 관대함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부권 사회의 불공평에 의해 희생당하는 여성을 아버지를 추

방함으로써 돕고자 하는 측면⁶³⁾으로도 볼 수 있다.

히타이트 법에는 두 여인에 대한 네 가지 관련 조항이 있는데, 성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여인들의 신분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한다. 히타이트 법은 레 20장 14절(여인과 그 어머니)과 18장 18절(아내와 그 자매)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레위기와 히타이트 법은 두 자매와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야곱의 결혼(창 29: 21-30)과 히타이트 법(HL §§194, 200)에서 노예 또는 포로인 여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성서는 두 형제가 미혼인 여자와 성 관계를 갖는 상황을 논의하지 않으나, 형제의 아내와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자(無子)의 형벌을 선언한다(레 18: 16; 20: 21; 참고. HL §195).

레 18장 17, 18절은 성행위에 대한 금령 뿐 아니라, 결혼(קַיֵּן 라카흐)에 대한 금령도 포함한다. 다른 금령들(친어머니, 아버지의 여인, 남자 형제의 아내, 며느리)에 명시된 금지 이유는 모두 2인칭 남성(수신인 '너')을 중심으로 한 관계였다면, 레 18장 17절의 금지 이유는 이들이 그 여인의 친족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레 18장 18절은 자매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무시한 이러한 성범죄와 결혼은 결국 여성의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남성 자신의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와 같이 레 18장은 고대 서아시아의 법전과는 달리 여성의 가족(한 여성과 그 딸, 그리고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아내와 그 자매)간의 관계성도 고려하고 있다. 맥클레니-새들러(M. G. McClenney-Sadler)는 오경의 족보 이야기를 사회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레 18장의 근친상간 금령은 남성 수신인에 관하여 친자 관계의 순서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계급주의보다는 오히려 가족 내 결혼, 양가 계승, 양가 거주(bilocality)의 기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질서라고 보았다.⁶⁴⁾ 따라서, 레 18장 근친상간 금기는 부계 중심에서 양가로 연장될 수 있다.

63) G. Cardascia, *윗글*, 7-16쪽.

64) M. G. McClenney-Sadler, *Re-Covering the Daughter's Nakedness: A Formal Analysis of Israelite Kinship Terminology and the Internal Logic of Leviticus 18*, (Ann Arbor: UMI, 2002), 192쪽.

4. 결론

본 소고는 고대 서아시아의 법전과 레 18장의 근친상간법을 본문간 해석 방법에 의해 비교 고찰하였다. 고대 서아시아의 법전은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불법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다양한 사례법과 “딸” 목록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함축적인 레 18장의 성 금령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고대 서아시아의 법전과 레 18장이 가족 안에서의 불법의 성행위에 대한 유사한 금령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대 서아시아 법들에 나타나는 성(性)에 관한 금령들은 정/불결로 분류되기보다는 광범위한 입법적 주제로 소유권과 관련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레 18장은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레 18: 2, 4, 5, 6, 21, 30)라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 공식’을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야훼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임을 강조한다. 또한 레 18장 5절의 서론적 권고에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고, 마지막 훈계(레 18: 24-30)에서는 이방 풍속(異邦風俗)으로 야훼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는 약속된 “땅”으로부터 토해내고 끊김을 당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가정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다. 레 18장 성 금령은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각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윤리적 도덕적 과제로서 신앙적인 질문과 신학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레 18장의 불법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은 정결을 기반으로 가정과 사회 공동체 안의 질서와 순결을 요구하며, 이 정결과 질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가 야훼의 공동체로서 정결과 질서를 지킬 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약속된 땅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생존하려면, 그리고 거룩한 야훼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들은 금지된 성 관계를 끊고, 성행위에 대한 모든 규정들을 지켜야만 한다.

5. 참고문헌

- 김 영진, 「율법과 고대근동의 법 연구: 율법과 법전」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구약성서 연구에 있어서 고대근동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9집(2000), 259-288쪽.
김 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 멜허, S. J., “레위기의 성결법전과 인간의 성(性),” (강 성열 옮김), 「신학이해」 17(1999), 554-578쪽.
- 박 기석, 「古代 히브리 法思想에 關한 研究」 (광주: 전남대학교, 1986).
- 이 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8).
- 정 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조 미형, “레위기 18장의 성행위 금령 연구,” 「구약논단」 제23집(2007), 120-146쪽.
- Cardascia, G., “Égalité et Inégalité des Sexes en Matière d'atteinte aux Moeurs dans le Proche-Orient Ancien,” *Die Welt des Orients* 11(1980), 7-16쪽.
- Daube, D., “Biblical Landmarks in the Struggle for Women’s Rights,” *Juridical Review* 23(1978), 177-197쪽.
- Douglas, M.,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erpretation* 53(1999), 341-364쪽.
- _____,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Driver, G. R./J. C. Miles (eds.), *The Assyrian Laws*, (Oxford: Clarendon Press, 1935).
- _____, *The Babylonian Laws*, (Oxford: Clarendon Press, 1952).
- Elliger, K., *Leviticus*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4), (Tübingen: Mohr/Paul Siebeck, 1966).
- Finkelstein, J. J., “The Law of Ur-Nammu,” *ANET*, 523-525쪽.
- Frymer-Kensky, T., “Law and Philosophy: The Case of Sex in the Bible,” *Semeia* 45(1989), 89-102쪽.
- Goetze, A., “The Laws of Eshnunna,” *AASOR* 31(1956).
- Hallo, W. W.(ed.), *The Context of Scripture II: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e World*, (Leiden, New York: Brill, 1997).
- Harper, R. F.(ed.), *The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4).
- Hoffner, H. A. Jr.(ed.), *The Laws of The Hittites*, (Leiden · New York · Köln: Brill, 1997).
- Knohl, I.,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95).
- Kramer, S. N., “The Ur-Nammu Code: Who Was Its Author?,” *Or* 52(1983), 453-456쪽.
- _____, “Lipit-Ishtar Lawcode,” *ANET*, 159-161쪽.
- Leggett, D. A., *The Levirate and Goel Institution of the Old Testament*, (Cherry Hill: Mack Publishing Company, 1974).
- Levine, B. A., *Leviticus לויקרא: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 · New York ·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Mahul, M., *The Comparative Method in Ancient Near Eastern and Biblical Legal Studie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0).
- Meek, T., “The Code of Hammurabi,” J. B. Pritchard(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 Milgrom, J., *Leviticus 17-22*, (New York · London · Toronto: Doubleday, 2000).
- Neufeld, E., *Ancient Hebrew Marriage Laws: With Special References to General Semitic Laws and Customs*, (London: Longmans, 1944).
- Noth, M., *Leviticus*, Trans. J. E. Anders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65).
- Otto, E., "False Weights in the Scales of Biblical Justices? Different Views of Women from Patriarchal Hierarchy to Religious Equality in the Book of Deuteronomy," V. H. Matthews (eds.), *Gender and Law in the HB and the ANE* (JSOTSup 26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28-146쪽.
- Philips, A., *Ancient Israel's Criminal Law: a New Approach to the Decalogue*, (Oxford: Basil Blackwell, 1970).
- Rattray, S., "Marriage Rules, Kingship Terms and Family Structure in the Bible," *SBLSP* 26(1987), 537-544쪽.
- Roth, M. T.,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SBL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Series*, (Atlanta: Scholars Press, 1977).
- Sarna, N. M., *Exodus: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 Stewart, D. T., *Ancient Sexual Laws: Text and Intertext of the Biblical Holiness Code and Hittite Law*, (Ann Arbor, MI: UMI, 2000).
- Walton, J. H.,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Michigan: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9).
- Wenham, G. J.,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79).
- Westbrook, R. (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2 Vols, (Leiden: Brill, 2003).
- Yaron, R., *The Laws of Eshnunna*, (Jerusalem: Magnes Press, 19882).

검색어

레위기 18장 · 고대 서아시아 법전 · 성행위 금령 · 근친상간 · 거룩

투고일: 2009년 3월 1일

심사일: 2009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5일

A Comparative Study on Sexual Prohibitions in Lev. 18
and the Ancient Near East Code:
Prohibitions on Sexuality in Consanguinity and Affinity

Mi-Hyoung Cho

Lecturer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D

This paper compares the sexual prohibitions in Leviticus 18 and the Ancient Near East (ANE) Code. It focuses on the sexual prohibitions in consanguinity and affinity. It examines the sexual prohibitions in Lev. 18 and the ANE Code based on the intertextuality. The sexual prohibitions in Lev. 18 and the ANE Code have man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s of their contexts, forms and functions. Although the ANE Code does not treat the incest laws as in detail as Lev. 18 does, it provides a number of cases and the daughter's list which are not listed in Lev. 18, and thus it is beneficial in understanding the sexual laws of Lev. 18.

Leviticus 18 describes the most organized and systematized laws on incest in the Old Testament. Leviticus 18, included in the Holiness Code (H), covers sexual matters in consanguinity and affinity (Lev. 18: 6-18) and a variety of sexual unions (Lev. 18: 19-23). The sex laws of the ANE Code are addressed either in the criminal law dealing with adultery and rape or in the civil law dealing with marriage and family matters. They focus on maintaining the order of property, the right of

possession, the right of inheritance, the patriarchy, and the hierarchical society. However, unlike the ANE Code, Lev. 18 is described as the form in which the narrative and law are weaved into Torah, Sinai traditional narrative, and the Holiness Code. Also, it defines the incest as the sexual crime which pollutes and destroys the family system. The Israel's strong concerns in the Holiness Code in punishing the immoral sexual conducts with the fatal death penalty are to prevent individuals and community from being confused and to define the boundaries in the household. According to Lev. 18, Israel must protect the purity of the land which is based on the pureness of the families in order to get their right to subsist. For Israel to permanently live in the land and to become the YHWH's holy community, they would have to prevent the immoral sexual behaviors and keep all of the ordinances against the forbidden sexual conducts.

Keywords

Leviticus 18
The Ancient Near East Code
Sexual Prohibitions
Incest
Holiness